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
----------	----

제출년월일 : 2014. 8. 8.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및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등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나. 용자 규모의 적정 여부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다. 상위법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를 의무화 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안 제10조)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관련 조항 수정(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안 제9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금”을 “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기금의 용도)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용도
2.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3.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4.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5.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6. 그 밖에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제1항 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을 “기금”으로, “있다고”를 “있다고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유자금이라 함은”을 ““여유자금”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기금 등이”를 “기금 등의”로, “위원회”를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이자율”로 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9인”을 “9명”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 호에 정한 자로”를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관리기금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기금운용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각 기금운용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용자 규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기금결산)”을 “(관리기금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결산”을 “관리기금결산”으로 한다.

제9조 중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를 “운용·관리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하여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이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사업에 용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관리기금의 재원) <u>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u>기타 수입금</u> <p>제3조(관리기금의 용도) <u>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용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u>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관리기금의 재원) <u>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의-----</u> <p>제3조(관리기금의 용도) <u>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용도</u>

2.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3.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4.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5. 기타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은 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과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생략)

2.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3.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4.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5.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6. 그 밖에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
----- 기금 -----

----- 있다고

제6조에 따른 -----

② ----- “여유자금”이란 -----

1. (현행과 같음)

2.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여
유자금

제5조(예탁자금 및 이자율 등) 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
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
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이 금융자산 운용 수익
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정한다.

③ 예탁기간 만료 전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
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하여 심의한다.

1. ~ 6. (생략)

7. 기타 관리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
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 그 밖에 -----

제5조(예탁자금 및 이자율 등) ①
제4조에 따라-----

1개월 -----.

② -----

기금 등의 -----
----- 인천광역시통
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③ -----
----- 이자
율-----
-----.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

③ ----- 1명-----
-- 1명----- 9명 -----
-----.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생략)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신설>

제7조(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금운용관을 지정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기금운용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④ (생략)

-----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위촉하는 사람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

제7조(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 관리기금운용계획-----.

② 관리기금운용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각 기금운용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용자 규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결산) ① 관리기금운용
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9조(관리기금의 운용·관리) 관
리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시
장이 운용·관리하되 「지방재
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기금결산) ① -----
----- 관리
기금결산 -----.

② 삭 제

제9조(관리기금의 운용·관리) --

--- 운용·관리하며 「지방재
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
출예산 외-----
-----.

제10조(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이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시
행에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세부사항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